

AFPK® 자격인증 절차안내

AFPK 자격시험 합격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AFPK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되어 누적된 계속교육학점(수료증, 합격증 등 첨부)을 충족한 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합격 후 인증 신청시기	계속교육요건(AFPK)	학점 인정 기간
합격 후 1 년 이내	필요없음	-
합격 후 1 년 경과 2 년 이내	합격 후 경과월 * 0.83	합격 이후 수료 및 취득
합격 후 2 년 경과	합격 후 경과월 * 0.83 (윤리 2 학점포함)	인증신청 시점의 최근 2 년 이내
합격사실 실효	합격 후 3 년 경과	

※ 합격확정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합격사실이 실효되어 재시험을 통해 자격을 다시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1. 자격인증 신청 서류

- (1) AFPK 자격인증 신청서
- (2) AFPK 윤리준수 서약서
- (3) 라이선스비 납부사실 확인서 (예. 은행 온라인 입금증 사본 등)
 - * 법인회원 소속직원 및 대학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라이선스비는 AFPK 자격인증 후 2 년간 유효합니다.
- (4) 반명함판 사진 1매  사진변경을 원하실 경우만 제출 (5) 실무경험확인서

2. 라이선스비 납입방법

- (1) 금 액 : 110,000 원 (vat 포함/2 년)
 - * 법인회원 소속직원 및 대학생은 라이선스비가 할인되며, 할인된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 법인회원별 할인은 한국FPSB로 문의(Tel. 02-3276-7610)
- (2)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06-910006-59704/ 예금주. 한국 FPSB

2. 제출방법

<우편접수>

(우) 04158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 층 한국 FPSB 인증담당자 앞

<팩스> 02-6008-2160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자격인증신청은 익월에 자격인증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격 인증서를 등기 발송해 드립니다.

AFPK® 자격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AFPK® License)

기본정보	한 글		영 문	
	생년월일		핸드폰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		유선연락처	
E-MAIL				
부가정보	☐ 금융기관 종사자 ☐ 일반 / 일반기업 종사자 ☐ 학생			
	회사(학교)명			
	부서(전공)명			
우편물 수령처	주 소	(-)		
라이선스비 납입 방법	■ 라이선스비 : 110,000원 (vat포함/2년) * 법인회원 소속직원 및 대학생은 라이선스비가 할인되며, 할인된 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법인회원별 할인률은 한국FPSB로 문의(Tel. 02-3276-7610) ■ 무통장입금 : 하나은행 / 106-910006-59704 / 예금주. 한국FPSB (*주1) 법인회원 (2022년 3월 현재)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BI저축은행 보험 :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한국재무설계, KB손해보험, 증권 :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주2) 대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후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자격유효기간 : 2년 AFPK자격은 매 2년마다 계속교육 20학점(윤리2학점포함)을 취득 한 후 윤리준수 서약을 다시 하고 라이선스비를 납입하여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자격표장사용방법 안내 AFPK자격인증 신청자는 AFPK자격인증서를 수령한 다음부터 AFPK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효한 AFPK자격인증자가 아님에도 AFPK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FPSB의 징계 및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한국FPSB에서는 AFPK 자격인증서 및 자격유효기간 안내 등 자격유지에 따른 안내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작성하시는 개인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한국FPSB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한국FPSB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AFPK자격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AFPK®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Declaration and Agreement)

1. 확인 및 서약 (Declaration for AFPK Certification)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고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1) 본인은 현재 어떠한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2) 본인은 현재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3) 본인은 정부기관 또는 업계 자율규제기관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4) 본인은 현재 금융기관, 전문직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법인 및 단체 등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 (5) 본인은 현재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가 되지 못하는 아래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예 ____, 아니오 ____

(주)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표시된 항목이 있으면, 각각의 사건에 관련된 주요한 사실을 별도의 용지에 기록 첨부하여야 하며, 소환장, 고소장, 답변서, 판결문, 벌금 납부증명 등과 같은 적절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협약 사항 (Terms and Conditions of Certification)

- 가. 본인은 한국FPSB가 본인이 “AFPK”,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및  자격상표(이하 “AFPK자격표장”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인증을 하였으며, 자격인증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에 한해 유효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자격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자격인증의 효력소멸과 함께 AFPK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유효기간 만료일자로 종결됩니다. 만일 자격 재인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AFPK 자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자격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AFPK 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FPSB가 박탈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나. 본인은 한국FPSB의 주1)윤리규정 및 징계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업무수행기준규정 및 표장사용규정을 포함한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의 현재 조항 및 앞으로 경우에 따라 수정될 조항에 대하여서도 성실하게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주1) “윤리규정 및 징계규정”은 한국FPSB홈페이지(www.fpsbkorea.org) 메뉴 중 [AFPK인증안내]->[AFPK자격인증]의 6.윤리규정 및 징계절차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다. 만일 본인이 한국FPSB의 윤리규정 및 징계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국FPSB가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FPSB의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상표인 “AFPK”자격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한국FPSB가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라. 본인에 대한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 혹은 전적인 부주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FPSB 또는 한국FPSB의 이사, 임직원 및 한국FPSB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과 관련된 제반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본인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후보자 본인은 제2항의 협약 사항에 명시된 각 조항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자유의사로 동의합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을 포함하는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및 징계 내용을 웹사이트 및 신문광고 등 징계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고객과 일반에게 공지하는 모든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실임을 서약하며 만일 진실과 다를 경우에 자격인증본부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 _____

3. 결격사유 (Fitness Standards)

아래의 결격사유(윤리규정 제3장)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 인증이 될 수 없습니다.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보험,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정부기관, 업계자율규제기관,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에 있는 자
- (10)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한국FPSB가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그 조치기간 중에 있는 자
- (12)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
- (13) 한국FPSB, 국제FPSB 또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나 회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